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2월 26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안은 ‘자문단’을 합의체인 ‘위원회’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‘위원’을 ‘자문단원’으로 수정하고 있는데, 안 제31조제4항 및 제33조 제목에서도 ‘위원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역시 ‘자문단원’으로 수정하고,
-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별도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성별 구분 없이 200명 이내로 함(안 제31조제2호).
-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수정함(안 제31조제4호).
- 안 제33조 제목을 “자문단원의 임기”로 함(안 제33조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”를 “이내로 구성하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안 제33조의 제목 “(자문단 위원)의 임기”를 “(자문단원의 임기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60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 한다.</p> <p>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<u>자</u>(이하 "전문가"라 한다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00</u> <u>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자문단</u> <u>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</u> <u>람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이내로 구성하되,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자</u> <u>문단원</u> -----.</p>
<p>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<u>단장·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</u>는 2년으로</p>	<p>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<u>자문단원</u>----- -----</p>	<p>제33조(자문단원의 임기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하되 연임할 수 있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임기 만료전이
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
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
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남은 임기로 한다.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
등 위원의 직무를 수
행하는 데 부적합하
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(생략)

-----.

----- 만료 전이
라도 시장이 자문단원-
----- 있다.

1. -----
자문단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”을 “20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자문단원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자문단 위원의 임기)”를 “(자문단원의 임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단장·부단장 및 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”을 “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”으로, “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60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한다.</p> <p>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<u>자</u>(이하 "전문가"라 한다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단장 및 부단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33조(<u>자문단</u> 위원의 임기) 단장·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<u>만료전이라도</u>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00명 이내로 구성</u> <u>하되, 자문단원</u>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로</u> ----- -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자문단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3조(<u>자문단원</u>의 임기) <u>자문단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만료 전이라도</u> 시장이 <u>자문단원</u>----- <u>있다.</u></p>
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(생략)

1. ----- 자문단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